

#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 감채기금 재원중 ‘15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50,000백만원이 454,305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 나.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 감 (A-B)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 감 (A-B)		
<b>합 계</b>	<b>471,883</b>	<b>167,578</b>	<b>304,305</b>	<b>합 계</b>	<b>471,883</b>	<b>167,578</b>	<b>304,305</b>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sup>1)</sup>	454,305	150,000	304,305	예수금 상환 <sup>3)</sup>	원금	150,000	150,000	-
	기타 전입금 <sup>2)</sup>	8,092	8,092	-		이자	8,092	8,092	-
이자수입	186	186	-	차입금원리금 상환 <sup>4)</sup>	8,800	-	8,800		
예치금 회수	9,300	9,300	-	일반운영비	30	30	-		
				<b>예 치 금</b>	<b>304,961</b>	<b>9,456</b>	<b>295,505</b>		

- 1) 전입금 중 순세계잉여금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

- 2) 전입금 중 기타 전입금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 3) 예수금 상환 :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
- 4)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공공자금 기금 차환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변경안의 개요

- 본 변경안은 201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감채기금 적립금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감채기금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정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5천 6백만원임.

#### <2016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sup>㉑</sup>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 재 액 <sup>㉒</sup> = <sup>㉓</sup> + <sup>㉔</sup>
	수 입 <sup>㉕</sup>	지 출 <sup>㉖</sup>	증 감 <sup>㉗</sup>	
9,299,898	158,278,558	158,122,560	155,998	9,455,896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다.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

- 당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2016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675억 7천 8백만원 이었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감채기금 적립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조례 제3조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법정 의무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인 4,543억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감채기금 적립금 내역]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1조 6,888억원
- 의무지출	: 7,802억원(자치구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전출금)
- 적립금 산출	: 1조 6,888억원 - 7,802억원 = 9,086억원
	9,086억원 × 50% = 4,543억원

- 서울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4,543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43억원은 예치해 2017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차변경 (A)	1차변경 (B)	당초 (C)	증감 (A-C)	항 목		2차변경 (A)	1차변경 (B)	당초 (C)	증감 (A-C)
합 계		471,883	167,578	167,578	304,305	합 계		471,883	167,578	167,578	304,305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454,305	150,000	150,000	304,3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원금	150,000	150,000	150,000	-
	기타 전입금	8,092	8,092	8,092	-		이자	8,092	8,092	8,092	-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86	186	-	차입금원금상환		8,800	8,800	-	8,800
						기금관리비		30	30	30	-
예치금 회수		9,300	9,300	9,300	-	예치금		304,961	656	9,456	295,50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초 의회에서 의결받은 감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조치는 관련법령과 예산심의와 의결에 있어서 의회의 독점적 권한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이 감채기금 운용계획의 급격한 변경을 사전에 예방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참고자료 1>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내부위원 : 4명

○ 외부위원 : 11명(임기 2년)

( '16. 10 현재)

연번	분야	성명	현 직	비고
1	위원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2	부위원장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3	공무원	조옥형	재무국장	
4	공무원	한영희	재정기획관	
5	시의원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	시의원	유 용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4선거구)	
7	시의원	최호정	새누리당 (서초구 제 3선거구)	
8	경제·재정 (재무개선)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 부교수	
9	경제·재정 (재무행정)	금재덕	시립대 행정학과교수	
10	교통·건설 (도로교통)	홍성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 위원	
11	교통·건설 (교통영향평가)	이미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2	금융·회계 (재무회계)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이사	
13	금융·회계 (민간투자사업)	김용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문	
14	금융·회계 (재무사업 평가)	홍복이	서일회계법인	
15	법 른	조숙현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